

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영실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5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
발 의 자 : 이영실, 김생환, 김경영,
권영희, 김경우, 최 선,
임만균, 송아량, 이승미,
이은주, 박기재, 전병주,
양민규, 박순규, 봉양순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시민과 여성관련시설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이용료의 부과·징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.
- 또한 서울여성플라자의 연수시설이 스페이스 살림으로 이관됨에 따라 연수시설 관련 감면규정 및 이용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설 이용자를 교육과정이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규정함 (안 제18조제1항)
- 나. 여성플라자의 숙박(연수)시설 이용감면 사항 및 이용료 부과기준을 삭제함. (안 제19조제1항 및 안 별표 6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5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및”을 “또는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.

별표 6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6]

여성플라자의 시설 이용료 부과기준(제18조제1항제1호 관련)

1. 기본시설 이용료

구 분	기준금액	비 고
국제회의장 (전체)	360,000원 ~ 500,000원	1. 1회 단가로서, 1회란 오전(10:00~14:00), 오후(14:00~18:00), 야간(18:00~22:00) 중의 하나임 2. 토요일 오후와 야간 및 일요일·공휴일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
아트홀	280,000원 ~ 400,000원	
회의실	5,000원 ~ 50,000원	1. 시간당 단가이며, 회의실의 경우 전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50,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2. 1시간 이내 초과 시는 다음시간 이용료까지 가산함 3. 토요일 오후와 야간 및 일요일 또는 공휴일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
세미나실	10,000원 ~ 30,000원	
시청각실	20,000원 ~ 40,000원	
강의실	5,000원 ~ 30,000원	

※ 시설별 부속시설 이용료는 원가수준과 다른 기관의 시설이용료를 고려하여 실비로 산정.

2. 체육시설 이용료

구 분	기준금액		비 고
	시설이용	금 액	
수 영	1개월	40,000원 ~ 80,000원	
헬 스	1개월	40,000원 ~ 80,000원	
에어로빅	1개월	40,000원 ~ 60,000원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8조(이용료의 부과·징수) ①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의 교육과정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9조(이용료의 감면 등)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성플라자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.</p> <p>1.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가 이용하는 경우(자치구는 제외한다) :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. <u>다만, 숙박(연수)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.</u></p> <p>2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51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: 기본시설</p>	<p>제18조(이용료의 부과·징수) ① --- ----- <u>또</u> <u>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9조(이용료의 감면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<u><단서 삭제></u>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
50을 줄임. 다만, 숙박(연수)시설
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
20을 줄인다.

② (생략)

--. <단서 삭제>

② (현행과 같음)